



# LEGAL UPDATE

소송·중재

Feb. 2024

##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와 출연기업들 간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의 소 20건 승소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케이스포츠')가 케이스포츠 설립 당시 출연한 다수의 기업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무법인(유) 화우(이하 '화우')의 기업송무그룹은 8개 그룹(20여개 계열사)을 대리하여 응소 및 반소 제기를 하였습니다. 화우는 취소원인을 명시하지 않은 취소의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취소 원인을 잘못 표시한 경우까지도 취소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는 주장을 적극 개진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케이스포츠가 각 기업들에게 출연금 및 이자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1. 사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미르와 케이스포츠는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설립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르는 청산절차 종결 후 출연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켰습니다. 반면 케이스포츠는 여전히 청산절차 진행 중인데, 2022. 11.경 각 출연기업들을 상대로 출연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개별적으로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이하 '이 사건 소')를 다수 제기하였습니다.

케이스포츠의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2019. 11.경 유일하게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가 케이스포츠를 상대로 출연금을 반환해 달라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당시 화우가 케이티를 대리하였습니다(이하 '선행 소송'). 법원은 선행 소송에서 출연행위에 대한 동기 착오 취소를 인정하고 케이티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은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 2. 법원의 판단

화우는 선행 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20여 출연기업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출연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사기 또는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소에서 새로운 쟁점이 된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해서도, 화우는 각 출연기업들의 케이스포츠에 대한 공문 발송 및 도달로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의 각 1심 법원은 출연기업들의 선택적 청구원인 중 '동기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케이스포츠는 표면적인 목적과 달리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각

출연기업들이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법인으로 생각하여 착오에 빠진 것은 상대방측에 의해 유발된 것이며,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각 1심 법원은 2018. 8.경 출연기업들이 케이스포츠에 보낸 공문을 통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연기업들 중 일부가 위 공문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서도 그 취소원인을 기재하지 않거나 '강박'을 원인으로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화우의 주장에 따라, '취소권의 행사는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고, 취소원인을 명시하지 않았다거나 그 취소원인을 달리 표시하였다고 하여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 3. 판결의 의의

이 사건 판결은 케이스포츠 설립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 등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개입되었고, 재단 설립 자체가 취소되는 중대하고 현저한 위법성을 내포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케이스포츠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출연기업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있었으나 취소 원인이 잘못 표시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제척기간 내에 취소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소를 통해 다수의 1심 법원은 취소권 행사는 취소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취소원인을 달리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취소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취소원인을 명시하지 않은 취소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2004다43824 판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취소 원인을 잘못 표시한 경우까지도 취소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한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화우의 기업송무그룹은 기업을 둘러싼 각종 소송에 대하여, 소송진행방향, 입증활동 등 소송·중재 전반에 대하여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쟁해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안사건 뿐만 아니라 중국적인 권리실현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유형의 보전처분(각종 가압류 및 가처분 등)으로부터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ntacts

### 유승룡

T. (+82) 2 6003 7563

파트너변호사

E. [sryoo@yoonyang.com](mailto:sryoo@yoonyang.com)

### 이상필

T. (+82) 2 6003 7569

파트너변호사

E. [spl@hwawoo.com](mailto:spl@hwawoo.com)

### 박상재

T. (+82) 2 6182 8150

파트너변호사

E. [sjpark@hwawoo.com](mailto:sjpark@hwawoo.com)

### 최유나

T. (+82) 2 6003 7086

파트너변호사

E. [ynchoi@hwawoo.com](mailto:ynchoi@hwawoo.com)